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20
----------	-------

발의연월일 : 2025. 10. 10.

발 의 자 : 박준태 · 박충권 · 최수진
송언석 · 주진우 · 조배숙
강승규 · 강대식 · 신동욱
장동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임명, 권한, 사무 처리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 후 고위 공직 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어 수사 대상이나 관련 기관으로의 이른바 보은성·유착성 인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특검 제도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직무 종료 후 3년간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등의 정무직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및 차장,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법관, 검사와 공공기관의 장 및 상임임원 등으로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임용의 효력을 무효로 하며, 임용권자의 사전 확인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이해충돌

과 보은성 인사를 예방하고 수사 및 공소 제기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
6조의2 신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퇴직 후 공직임용 제한)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이하 이 조에서 “특별검사등”이라 한다)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그 직무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임명될 수 없다.

1. 헌법재판관(「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제외한다),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및 차장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 및 같은 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 제1호 및 제2호의 공무원에 준하는 직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5.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관

6.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임원
 8. 그 밖에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과 이해충돌 우려가 큰 직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제한 기간은 특별검사등이 제14조에 따른 퇴직, 제15조에 따른 해임 또는 제16조에 따른 파면 등의 사유로 직무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임용된 경우 그 임용은 무효로 한다.
 -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임용권자(관계 법령에 의하여 추천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임용대상자가 특별검사등으로 재직하였는지 여부 및 그 직에 있었던 기간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절차,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6조의2(퇴직 후 공직임용 제한)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이하 이 조에서 “특별검사 등”이라 한다)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그 직무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임명될 수 없다.</u> <u>1. 헌법재판관(「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제외한다),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u> <u>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및 차장</u> <u>3.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u> <u>4.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u>

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
및 같은 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 제1호 및 제2
호의 공무원에 준하는 직위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5.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관

6.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상
임임원

8. 그 밖에 특별검사등의 직무
수행과 이해충돌 우려가 큰
직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직위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제한 기
간은 특별검사등이 제14조에
따른 퇴직, 제15조에 따른 해임
또는 제16조에 따른 파면 등의
사유로 직무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임용된
경우 그 임용은 무효로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임용권자(관
계 법령에 의하여 추천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임용대
상자가 특별검사등으로 재직하
였는지 여부 및 그 직에 있었
던 기간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
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
른 절차, 확인방법,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